

사면 프로그램 FAQ – 2017년 1월 반독점국 주요 변경사항 업데이트



2017년 1월 25일 James L. McGinnis 작성 (“독점금지 분야”에 실린 글)

지금까지 반독점국은 사면 프로그램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FAQ”를 통해 공지해왔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에는 사면 신청자가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명시적으로 시인하도록 의무화했는데,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만을 보고했던 과거에 비해 강화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FAQ, p.6, fn. 7 참고).

반독점국은 [2017년 1월 17일 FAQ](#)를 통해 2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추가 공지했다. 첫 번째 주요 변경사항은 변호인이 의뢰인을 특정해야만 마커(marker)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 (FAQ, p.3 참고) 두 번째 주요 변경사항은 종종 이용되어온 B 유형 감면제도(Type B Leniency)를 통한 임원 사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반독점국의 재량권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FAQ, p. 22 참고).

이 두 가지 주요 변경사항으로 인해 변호인과 사면 신청 준비자들의 사면 신청이 당분간 주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변호인이 해당 의뢰인이 종사하는 산업부문을 특정하여 반독점국이 현재 계류 중인 이전 마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사항만 제공하면 충분하였다. 물론 과거의 기준 하에서도 신중한 조사와 숙고 없이 신속한 검토 후 마커 발급을 신청하는 변호인은 없었겠지만, 이제는 마커 발급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면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종류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특정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반독점국에 위험 신호를 남기지 않으면서 매끄럽게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주요 변경사항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과거의 사면 관행에서는 변호인이 완전히 협조하는 고위 임원은 보호받을 것이라 확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조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서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반독점국이 가능하면 B 유형 감면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A 유형 감면제도(Type A Leniency)와 고위 임원 보호

보장의 경우 “반독점국은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 규정이야말로 사면 신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정보원”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A 유형보다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B 유형 감면제도에서는 신청자가 반독점국이 형사 사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당시 첫 번째로 사면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B 유형 감면제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반독점국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인데, 이제는 기업의 사면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변호인이 협조하는 임원에게 보호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반독점국의 완전한 협조의 요건이 반독점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개인을 상대로 한 불리한 증언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뤄지는 두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사면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반독점국은 마커 획득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변호인은 의뢰인을 특정하기 전에 먼저 사면 신청 조건이 완벽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주요 변경사항의 경우 반독점국이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독점국은 형사 문제가 있는 기업이 보호를 받으려면 일부 임원들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업과 일부 임원들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더라도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반드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